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민주노동총합법화 시대를 맞이하며

격동과 혼란의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 20세기가 끝나고 새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내후년부터가 진짜 21세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가 바뀌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때 같으면 잔뜩 희망을 실어 새해의 꿈을 설게하겠지만 새 세기를 맞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스산하기만 하다. 그것은 날이 다르게 한기가 더해가는 겨울날씨 탓만은 아니다. 지금도 구조조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미 홍역을 치른 노동자들도 언제 또 다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칠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었고 경기가 계속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감언하지만 노동자들의 불안과 낙담을 떨쳐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체되지만 하는 개혁과 권력내부의 추악한 싸움들이 노동자들의 마음을 암울하게 할 뿐이다.

그런 속에서도 노동운동의 진전을 기대하게 하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하나는 11월 22일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확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헌법위반이라고 한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은 매우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안락의 새찬 도전 앞에 전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운동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조건의 변화이다.

따지고 보면, 민주노동총합법화 그 자체는 1987년 노동자

대항쟁을 거쳐 민주노조진영이 형성되고 1989년 전노협이 창설된 때부터 치면 1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1995년 11월 민주노총이 출범한 때로부터 보면 4년만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 관련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포함한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1963년 12월 노동법개정 때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무려 36년만에 완전히 폐지된 셈이다. 이 두 가지는 어찌보면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기만 했던 20세기말이 이 나라 노동운동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 “한국노동자들의 지치지 않는 투쟁의 승리”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 후 네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원 가운데 해고자가 들어 있고 산하조직에 전교조와 같은 법외조직이 참가하고 있다는 따위의 이유를 들어 번번히 설립신고서를 되돌려 보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에 설립신고증을 내주었고 민주노총은 비로소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어렵사리 쥐게 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그것은 노동부장관의 도장이 찍힌 한 장의 증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껏 그런 증서 없이도 이 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서 실재해 온 터에 합법성 쟁취를 그리 대견스러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잘못된 제도와 행정의 한 톨을 부수어 낸 작은 승리로 받아들인다”고 겸손해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는 결코 ‘작은 승리’로 만 볼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권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 스스로가 투쟁을 통해 쟁취한 정부수립후 최초의 성과물이다. 곧 정부수립후 대한노총이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한국노총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민주노총은 노동대중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치열한 투쟁을 통해 이룩된 전국중앙조직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100여명의 노동열사들이 목숨을 내던졌고, 2,805명의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수만명이 해고자 수배자로 거리를 헤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는 국제자유노련

(ICFTU)이 평가한 것처럼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정취하기 위한 한국노동자들의 지치지 않는 투쟁의 승리”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작은 제도 하나도 노동자들의 기나긴 세월에 걸친 피나는 투쟁 없이는 쉽게 정취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민주노총은 합법성 정취로 “길게는 1백여년의 역사에 뿌리박고 1970년 전태일열사 분신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가깝게는 19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으로 이어 온 민주노동운동이 드디어 그 역사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법률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억압과 거부, 질서와 차별의 대상인 ‘법외단체’, ‘불법노조’가 아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는 임의단체도 아니다. 이 나라 헌법과 노동관계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가져올 대외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통일성을 큰 폭으로 넓힐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민생협 확대된 영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조직체제와 운영 활동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법이 보장하는 몇몇한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가능한 한 광범위해야 하며, 가능한 한 공개적이어야 한다)을 지니게 됨으로써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더 넓은 활동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 민주노총의 합법성 확보는 민주노총의 실재를 사후적으로 인정받는 형식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11월 30일자 <김금수의 황해> (‘민주노총 합법화가 열 새 지평’)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사정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과 활동내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노동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때나 노사정위원회 참가 때와 같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각종 정책기구에 참가할 권리를 갖게 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추진

을 위한 유력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단체인교섭과 노사협의의 합법적인 당사자가 될 뿐 아니라 한국노총과 동등한 법적 지위 위에서 운동전선의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별 사업장에서도 '범외조직'인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이라는 이유로 가해졌던 사용자의 개별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의 명분은 공식적으로는 설 땅을 잃는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가져올 대외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민주노총에 대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큰 폭으로 넓힐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처럼 확대된 영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조직체제와 운영활동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 요구는 민주노총진영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의미한다.

### 분명한 원칙 수립과 조직혁신의 계기로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은 합법화 이전부터 이미 조직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다. 그것은 전국중앙조직인 민주노총 자체만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혁신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합법화를 계기로 조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힘과 대안을 아울러 갖춘 책임있는 사회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합법화를 계기로 조직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분발'의 내용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발전전략'에 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혁신은 전국중앙조직 상층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걸쳐 논의되어야 한다. 살려야 할 장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단점은 무엇인지 조직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나 이념, 운동전략과 같은 큰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일상활동에서 나타나는 작은 일과 운동의 기풍, 활동가의 자세, 품성에 이르기까지 운동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과감한 개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직의 혁신은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예가 정책참가와 정부재정 지원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한국노총과 같이 70여개에 이르는 각종 정책기구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정책참가를 위해서는 그 의의와 방식을 철저히 검토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핵심적으로  
연습하려면 법률상 제인은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정치세력화 성공의 열쇠는  
노동조합의 내부 견인에  
있게 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책참가는 제도적 요구투쟁의 중요한 수단이며, 생활옹호투쟁의 일환이다. 또한 정책참가는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기구가 권력과 자본의 이익이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질차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원칙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구운영의

민주화를 관철해 내야하며 교섭과 협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투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 정책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노동사회』 1997년 6월호, 김금수 이사장의 글 참조).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은 안 받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약한 예산에 허덕이는 상급조직에게는 매우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노동자가 낸 세금, 노동자를 위해 쓴다”는 식으로 합리화하여 쉽게 받아들여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이미 일부 지역조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은 액수이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 따라 접근하다 보면 민주노조진영이 자부하는 자주성의 원칙을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노총을 비판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들었던 예를 상기하면 쉽게 이해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면 광범한

대중토론을 거쳐 그 원칙과 방식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세워놓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책임있는 사회세력이 되어야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정치세력화를 드는 데는 대부분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정작 정치세력화의 추진은 생각만큼 수월하지가 않다. 최근 (가칭)민주노동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반공주의와 보수세력 지배를 위한 정치선거제도, 진보정당운동의 단절과 짧은 경험, 낮은 노동조합조직율과 함께 법률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제도적 제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1997년 3월 철폐되었고, 98년 4월 선거법 개정 때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지만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는 여전히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제약해 왔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 금지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전면 자유로워 지게 되었다.

이로써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현실적으로 억눌러왔던 법률상 제약은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정치세력화 성공의 열쇠는 노동조합의 내부 결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합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된 터이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궁극적으로는 진보정당 건설로 이어지고 현재는 (가칭)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나 있다. 그 중심은 분명히 대중조직인 노동조합, 민주노총이다. 물론 정당과 노동조합은 그 성격과 조직 활동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정당과 노동조합은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되 협력과 지원관계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핵심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노총은 사업과 활동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사업은 없고 형식만 걸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사회』 1999년 10월호, 노회

찬씨의 글 참조). 지금부터라도 정치위원회, 정치실천단의 활동을 전면 점검하고 대대적인 선전과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적은 일일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비록 가치이지만 발기인대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되었고 노동조합의 열망이 응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진보정당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조직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광범한 사회세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름부터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이 역시 광범한 대중토론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합법성 쟁취를 전대일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열사와 구속자, 해고노동자들에게 바치면서 "더 넓어진 활동공간에서 선배열사들이 목숨으로 지켜온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도덕성의 원칙 아래 민주노조운동을 마음껏 꽃피워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합법화를 이유로 지금껏 견지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정권과 자본이 그어놓은 제도권의 틀 안에 안주하지 않고", "1200만 노동자의 대변자", "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책임있는 대안세력으로 힘껏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민주노총의 바램대로 새로운 세기,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거대한 도전을 물리치고 새 희망과 보람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